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5)

-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 2)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 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9)

다른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의 기술능력란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명 이상

별표 5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을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을 “기간의 계산”으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

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2. 11.>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1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명 이상

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 질소 및 총 인 4) 대장균 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시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아.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흡인식 차량, 암물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 차량, 암물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400	600	800

이상 2.0배 미만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법 제53조 제1항제1호 법 제53조 제2항제1호	600 100 150 200 400 600 100 50 70 100 200	800 150 200 300 600 150 70 150 300	1,000 200 300 400 800 1,000 200 100 150 220 400
--	---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호	50	70	100
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2호	50	70	100
사.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3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50	80	100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80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자. 법 제14조제3항, 제29조제4항(법 제34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200	300	500
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70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6)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50	70	100
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제3항제6호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150	200	300

이상 1.3배 미만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200	300	400
이상 1.5배 미만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400	600	800
이상 2.0배 미만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600	800	1,000
이상 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	법 제53조			
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퇴비액비화기준 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 우	제1항제2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100	150	200
준의 1.1배 미만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150	200	300
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200	300	400
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400	600	800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600	800	1,000
준의 2.0배 이상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200	300	400
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너.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3	법 제53조	50	70	100
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	제3항제7호			

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 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 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 농가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 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8호	50	70	100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 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며.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 고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3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600	800	1,000	

이상				
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법 제53조			
업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제1항제3호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100	150	200
준의 1.1배 미만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150	200	300
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200	300	400
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400	600	800
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600	800	1,000
준의 2.0배 이상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		200	300	400
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	법 제53조	50	70	100
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제3항제11호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법 제53조	50	70	100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12호			
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법 제53조	50	70	100
한 경우	제3항제13호			
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	법 제53조	50	70	100
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제3항제14호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53조	50	70	100
없이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	제3항제15호			
게 하지 않은 경우				

퍼.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 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허.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 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7호	50	70	100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8호	50	7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연 락 처	(044) 201 - 7076